

교보파워인덱스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이 투자설명서는 교보파워인덱스파생상품투자신탁 1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보파워인덱스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명 : 교보파워인덱스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2. 자산운용회사명 : 교보투자신탁운용(주)

3. 판매회사명 및 상담가능 전화번호 :

	1588-1001		1588-3114	IB	02)3771-3000
	1544-0900		02)2020-8000		787-4000
	02)3772-1000		02)2004-9000		02)3276-5000
	1588-8585		1599-8000		02)3777-8000
	02)769-2000	IB	02)3787-2114		02)771-7711
	1588-3322		02)2008-5000		02)3770-5000
	02)369-3000		02)768-7000		02)3772-7000
	02)3770-2000		1588-6300		02)768-0114
	02)2009-7000		02)3770-0100	CJ	02)318-9111
	02)785-6611		1566-2566	KGI	02)3770-9000
	02)3774-1700		02)3787-5000	NH	02)2004-4114
	02)368-9200		02)3770-7114	SK	02)3773-8245
	02)3779-3000		02)2002-1111		1588-2428
	02)772-1004		1588-3111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4. 작성기준일 : 2008년 4월 7일

5. 투자설명서 비치·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

비치·공시장소	인터넷 게시주소
각 판매회사 본.지점	투자설명서 본문 '판매회사에 관한 사항 참조'
자산운용회사	www.kyoboitn.co.kr
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요약(핵심설명서)]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분류
4. 자산운용회사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6. 수탁고 추이
7. 해지사유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주요 투자전략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 가. 연평균 수익률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IV. 매입·환매 및 분배

1. 매입
2. 환매
3.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2. 투자위험
3. 투자대상
4. 투자제한

II. 자산의 평가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2. 환매관련 유의사항
3.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4. 운용자산 규모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제4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2. 잔여재산분배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4. 손해배상책임
5. 재판관할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2. 수시공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 본문 5쪽)

1. 명 칭 : 교보 파워인텍스 파생상품 투자신탁 1호
2.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3. 종 류 : 파생상품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 교보투자신탁운용(주)

II 투자정보(☞ 본문 5~7쪽)

구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국내대표주가지수선물기초지수 (파생상품거래에적합하도록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전체종목중에서 선정된 200종목을 기초로 한 지수, 이하 “대표주가지수” 라함)를 복제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는 인덱스형 파생상품 펀드로서 대표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면서 대표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 추구 -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 주요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의 벤치마크인 대표주가지수 수익률을 추적하면서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ETF(상장지수펀드)등에 투자하고, 추적오차가 최소화 되도록 운용
3. 주요 투자위험	- 「 예금자보호법 」의 보호를 받지 않은 실적배당상품 으로 시장변동 및 이자율이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변화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1등급으로 매우 높음 -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면서도 국내 주식시장의 매우 높은 시장 변동을 감수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함
5. 기준가격	-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시 적용되는 가격 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yboitn.co.kr)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년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박찬	1971	탐장	17개	14,595억	-고려대학 경영학과 -운용경력 총 9년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인텍스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 **과거성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위:%)

기간	설정일 이후						
	종류A (06.3.14~ 08.4.4)	종류B (06.3.21~ 08.4.4)	종류C (07.4.6~ 08.4.4)	종류e (06.8.23~ 08.4.4)	종류A2 (08.2.15~ 08.4.4)	종류C3 (08.1.16~ 08.4.4)	종류C2<장기주택 마련>(07.11.26~ 08.4.4)
투자신탁	19.03	19.30	21.42	22.23	47.66	15.59	7.66
비교지수	14.12	13.80	18.57	17.91	42.51	13.10	1.75

*비교지수 = 대표주가지수 * 100%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본문 9~10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분		지급비율								
		종류 A	종류 A2	종류 B	종류 C	종류 C2 <장기주택 마련>	종류 C3	종류 Cw	종류 e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¹⁾ (납입금액기준)	1.00	0.03	0.03	없음				0.50	
	환매수수료 ²⁾	없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없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보수	운용회사	0.150	0.150	0.150	0.150	0.150	0.150	0.150	
		판매회사	0.600	0.000	0.000	1.400	1.000	0.200	0.000	0.140
		기타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0.010
		합계	0.760	0.160	0.160	1.560	1.160	0.360	0.160	0.300
	기타비용	0.013	0.002	0.002	0.001	0.001	0.001	0.001	0.001	
<u>총보수·비용비율</u>		0.773	0.162	0.162	0.561	1.161	0.361	0.161	0.301	

주 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90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2)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8.4.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종류C2<장기주택마련>수익증권의 경우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저축계약 7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입·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에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이후
매 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 납입 (3시 이전) 수익증권 매입 (D+1 기준가격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 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 납입 (3시 이후) 수익증권 매입 (D+2 기준가격 적용)
환 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 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4 영업일(D+3) 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청구 (3시 이전) 기준가 적용 환매대금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 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4 영업일(D+3) 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청구 (3시 이후) 기준가 적용 환매대금 지급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투자설명서 본문 참조)**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_____ (점포명)_____ (판매직원 직위 및 성명)_____ (은)는 (고객 성명)_____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200 년 월 일
판매직원 _____ 서명 또는 (인)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 1. 명칭 교보파워인텍스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 2.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
- 3. 분류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 4. 자산운용회사 교보투자신탁운용(주)
- 5. 최초설정일등 연혁 2006. 03. 14 최초설정
 2006. 07. 03 약관변경(시기총액비중 산정기간 단축)
 2006. 07. 14 약관변경(종류 e 수익증권 신설)
 2007. 04. 04 약관변경(종류 C 수익증권 신설)
 2007. 10. 22 약관변경(종류 C2<장기주택마련> 수익증권 신설)
 2008. 01. 15 약관변경(종류C3 수익증권 및 수익증권 Gw 수익증권 신설)
 2008. 02. 13 약관변경(종류A2 수익증권 신설)

6. 수탁고추이 (1) 교보파워인텍스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A

(단위:억좌,%)

연 도	현재	6개월전	1년전	1년6개월전
	08.4.6	07.10.6	07.4.6	06.10.6
수탁고	1,591	889	225	15
증가율*	78.86	295.80	1,447.68	4,078.36

(2) 교보파워인텍스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B

연 도	현재	6개월전	1년전	1년6개월전
	08.4.6	07.10.6	07.4.6	06.10.6
수탁고	6,184	4,028	2,949	1,971
증가율*	53.51	36.59	49.67	3,175.92

(3) 교보파워인텍스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e

연 도	현재	6개월전	1년전	1년6개월전
	08.4.6	07.10.6	07.4.6	06.10.6
수탁고	76	44	14	0
증가율*	72.63	215.12	6,745.79	-

(4) 교보파워인텍스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c

연 도	현재	6개월전	1년전	1년6개월전
	08.4.6	07.10.6	07.4.6	06.10.6
수탁고	16	13	-	-
증가율*	27.03	628,391.72	-	-

(5) 교보파워인텍스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C2<장기주택마련>

연 도	현재	6개월전	1년전	1년6개월전
	08.4.6	07.10.6	07.4.6	06.10.6
수탁고	0.26	-	-	-
증가율*	-	-	-	-

(6) 교보파워인텍스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C3

연 도	현재	6개월전	1년전	1년6개월전
	08.4.6	07.10.6	07.4.6	06.10.6
수탁고	158	-	-	-
증가율*	-	-	-	-

(7) 교보퍼워인덱스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A2

연 도	현재	6개월전	1년전	1년6개월전
	08.4.6	07.10.6	07.4.6	06.10.6
수탁고	50	-	-	-
증가율*	-	-	-	-

* 매 6개월전 수탁고 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③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국내 주가지수선물기초지수(파생상품거래에 적합하도록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전체종목 중에서 선정된 200종목을 기초로 한 지수, 이하 “대표주가지수”)를 복제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는 인덱스형 파생상품 펀드로서 대표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면서 대표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벤치마크인 대표주가지수 수익률을 추적하면서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ETF(상장지수펀드) 등에 투자하고, 추적오차가 최소화 되도록 운용됩니다.

※추적오차(Tracking Error) 관리 방안

투자 자산 중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는 당시의 인덱스 복제 시스템에 의하여 구성되어 지고, 구성된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는 사전에 정해진 운용프로세스상 제약 조건에 따라 정기 리밸런싱(월별) 및 상시 리밸런싱을 통해 벤치마크 수익률 대비 0.50% 이상의 추적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단, 인덱스 구성 종목의 변경 또는 구성종목의 비율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운용프로세스상 제약 조건은 시장 상황에 따라 월별로 변경 가능 합니다.

3.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가격 변동이 큰 국내 상장주식 및 관련 지수선물, 지수옵션 등에 투자하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면서도 국내 주식시장의 매우 높은 시장 변동을 감수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높은 위험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전체 포트폴리오 중 이러한 유형의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는 일부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C2<		>	
18	가	99	가
1	가	1 (51 2 3
가	가)	가 ,7

등급	투자 위험	투자 대상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주식에 60% 이상 투자 하는 경우 -원금손실률이 최대 15% 이상으로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주식에 60% 이하 투자 하는 경우 -채권의 신용등급 허용한도가 BB등급 이하인 경우 -부동산, 실물자산, 특별자산에 60%이상 투자하는 경우 -원금손실률이 최대 15% 미만으로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기구
3등급	중간 위험	-주식에 30% 이하로 투자하는 경우 -채권의 신용등급 허용한도가 BBB등급 이상인 경우 -부동산, 실물자산, 특별자산에 60%이하로 투자하는 경우 -원금손실률이 최대 10% 미만으로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기구
4등급	낮은 위험	-주식에 10%이하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채권의 신용등급 허용한도가 A등급 이상인 경우 -부동산, 실물자산, 특별자산에 30%이하로 투자하는 경우 -원금손실률이 최대 5% 미만으로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원금보존 추구형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

C2< >

: 87 81

가	2009 12 31
가	18 가 99 1 1 (51 2 3 가) 가
가	300 (가)

	2 2
	7 ()
	가 7 가 야 함.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법시행령 제 80조 제5 항 ^(주1) 1 (1) 80 5 1. 2. 3. 4. 3 5. , 가 가 ,
소득공제	<u>저축 가입대상자가 근로소득자로서 세대주인 경우에는 당해년도 납입액의 40%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u>
소득공제추정	이 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함)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 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정함. ※ 저축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을 추정하지 아니함. 1. 당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주2) 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주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	----

산정방법	가 [_____] 가] [_____] (" [_____]") [_____]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고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자산운용회사(www.kyobotm.co.kr)·판매회사·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인터넷홈페이지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박찬	팀장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교보투자신탁운용 인덱스운용팀 (現) - 운용경력 총 9년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인덱스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상기 책임 운용전문인력이 현재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수와 운용자산 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제3부.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1.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7. 투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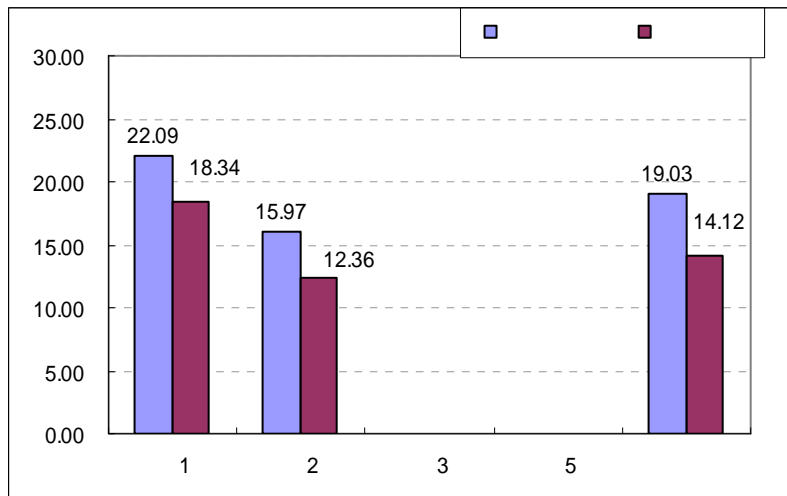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단위:%)

(1) 교보파워인덱스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A

	1 (07.4.5~ 08.4.4)	2 (06.4.5~ 08.4.4)	3	5	(06.3.14~ 08.4.4)
	22.09	15.97			19.03
	18.34	12.36			1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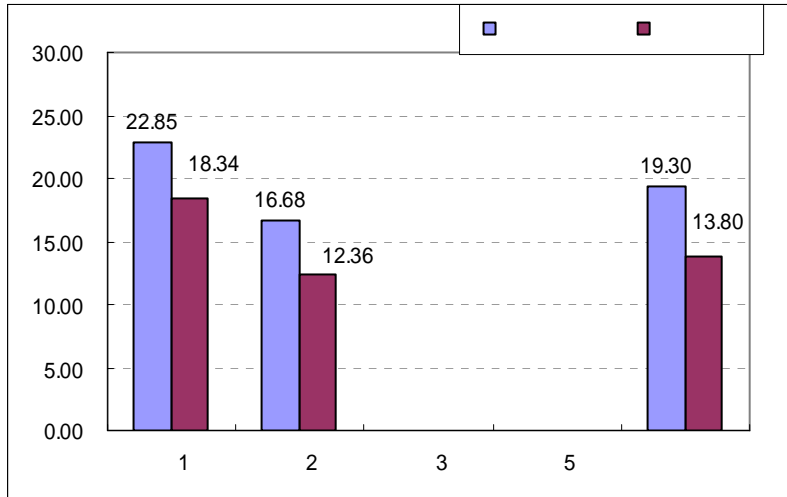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대표주가지수 100 %



(2) 교보파워인텍스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B

	1 (07.4.5~ 08.4.4)	2 (06.4.5~ 08.4.4)	3	5	(06.3.21~ 08.4.4)
	22.85	16.68			19.30
	18.34	12.36			1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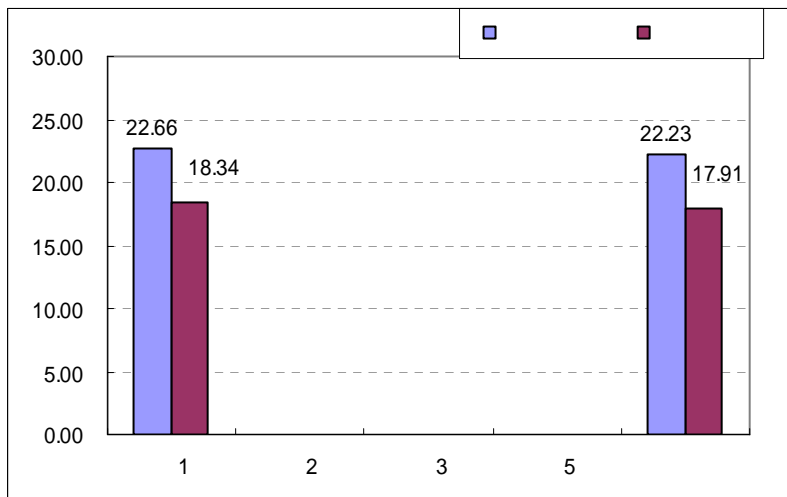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대표주가지수 100%



(3) 교보파워인텍스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e

	1 (07.4.5~ 08.4.4)	2	3	5	(06.8.23~ 08.4.4)
	22.66	-	-	-	22.23
	18.34	-	-	-	1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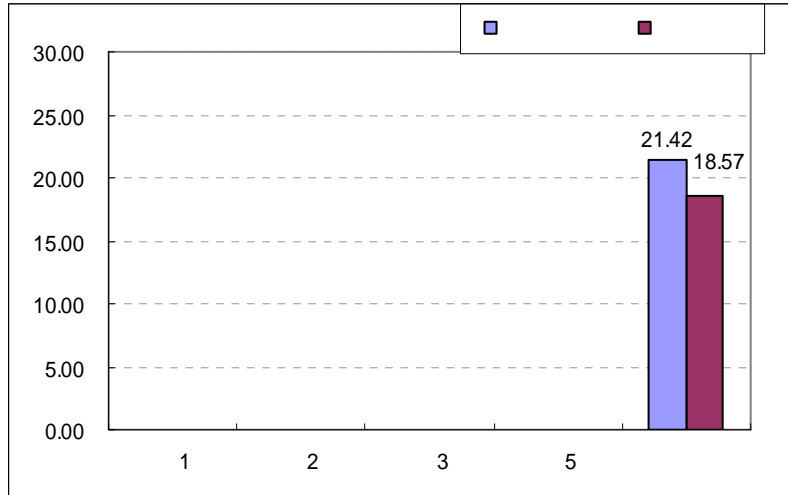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대표주가지수 100%



(4) 교보파워인텍스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C

	1	2	3	5	(07.4.6~ 08.4.4)
	-	-	-	-	21.42
	-	-	-	-	1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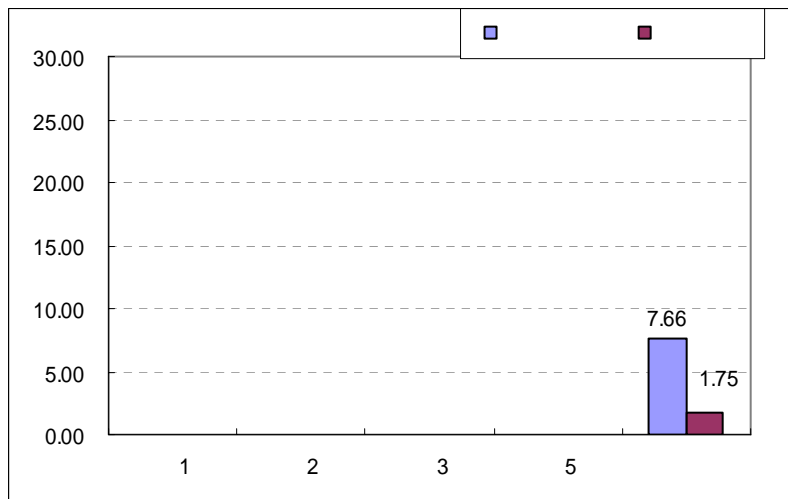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대표주가지수 100%



(5) 교보파워인덱스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C2 <장기주택마련>

	1	2	3	5	(07.11.26~08.4.4)
	-	-	-	-	7.66
	-	-	-	-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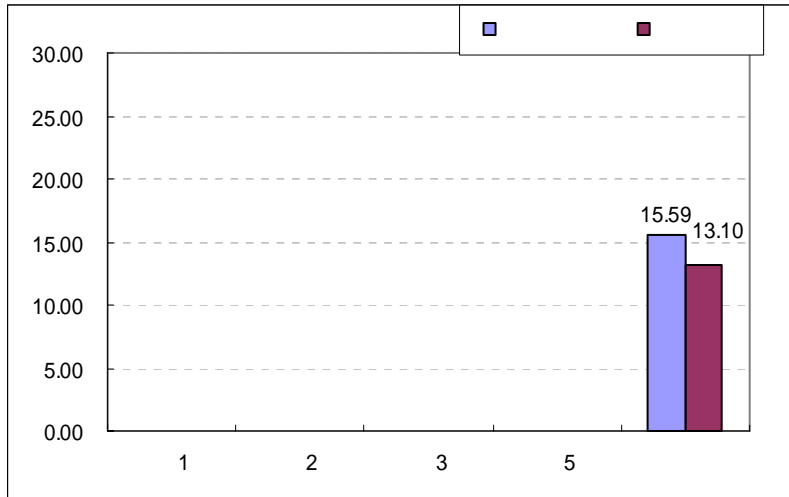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대표주가지수 100%



(6) 교보파워인덱스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C3

	1	2	3	5	(08.1.16~08.4.4)
	-	-	-	-	15.59
	-	-	-	-	1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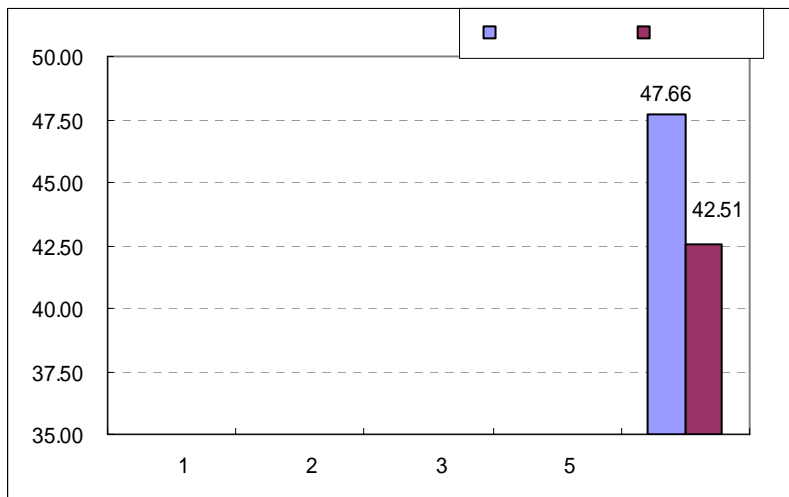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대표주가지수 100%



(7) 교보파워인텍스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A2

	1	2	3	5	(08.2.15~08.4.4)
	-	-	-	-	7.66
	-	-	-	-	1.75

주 1) 비교지수 = 대표주가지수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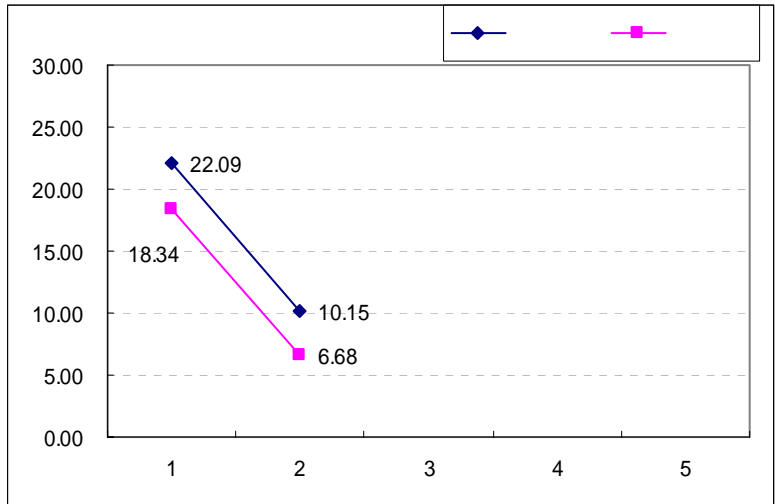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1) 교보파워인텍스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A

	1 (07.4.5~08.4.4)	2 (06.4.5~07.4.4)	3	4	5
	22.09	10.15			
	18.34	6.68			

주 1) 기재된 수익률은 기간수익률임

2) 비교지수 = 대표주가지수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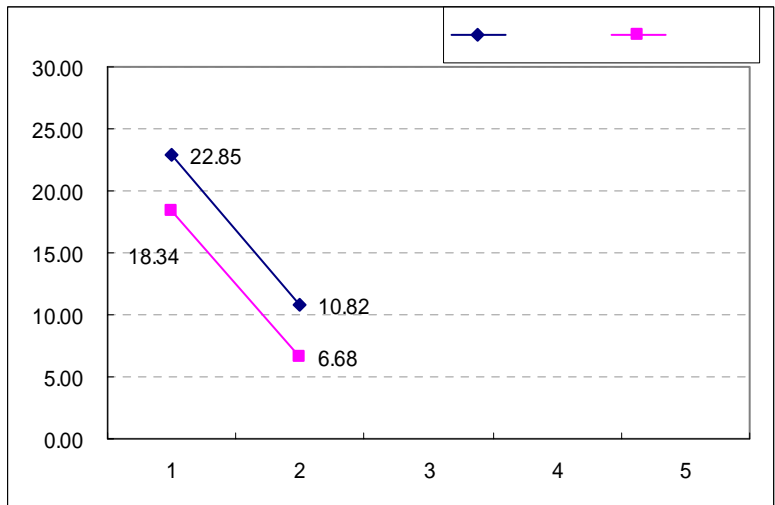


(2) 교보파워인텍스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B

	1 (07.4.5~ 08.4.4)	2 (06.4.5~ 07.4.4)	3	4	5
	22.85	10.82			
	18.34	6.68			

주 1) 기재된 수익률은 기간수익률임

2) 비교지수 = 대표주가지수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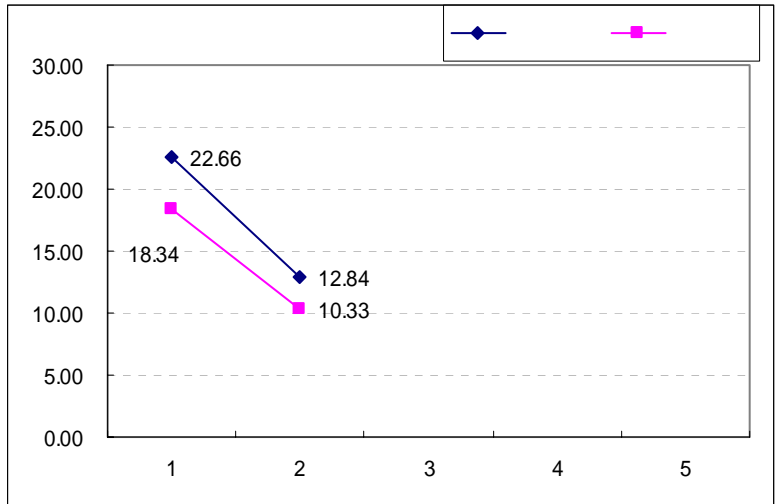


(3) 교보파워인텍스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e

	1 (07.4.5~ 08.4.4)	2 (06.8.23~ 07.4.4)	3	4	5
	22.66	12.84			
	18.34	10.33			

주 1) 기재된 수익률은 기간수익률임

2) 비교지수 = 대표주가지수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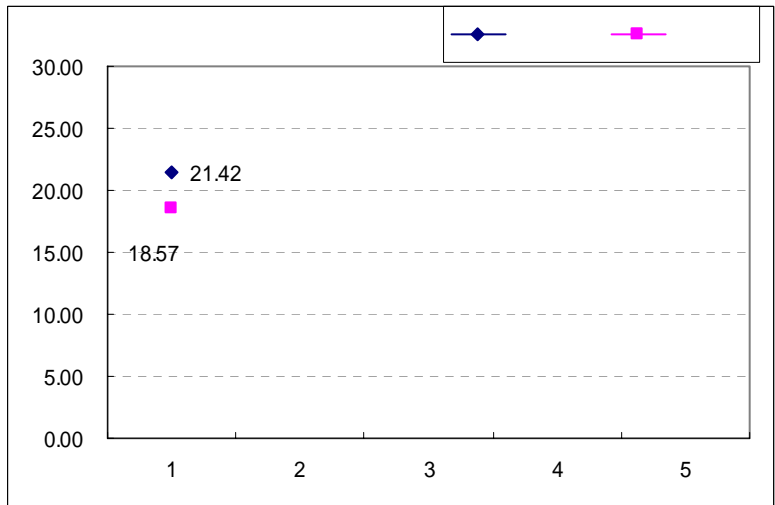


(4) 교보파워인텍스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c

	1 (07.4.6~ 08.4.4)	2	3	4	5
	21.42				
	18.57				

주 1) 기재된 수익률은 기간수익률임

2) 비교지수 = 대표주가지수 100%



(5) 교보파워인텍스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C2 <장기주택마련>

- 해당사항 없음

(6) 교보파워인텍스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C3

- 해당사항 없음

(7) 교보파워인텍스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종류 A2

- 해당사항 없음

Ⅲ.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8종의 수익증권이 발행되며, 오른쪽 표에서와 같이 상이한 보수율이 적용됩니다.

① 종류 A 수익증권 : 매 건별 납입금액 5억원 미만

구분	지급비율(연간,%)	비고(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0%	매입시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시

A2 :
- 17 2 8
- 가 ()
-

구분	지급비율(연간,%)	비고(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3%	매입시
환매수수료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B : 5

구분	지급비율(연간,%)	비고(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3%	매입시
환매수수료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④ C :

구분	지급비율(연간,%)	비고(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매입시
환매수수료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⑤ C2 > :
18 가 99 1
가3 1 (51 2 3
가 가)

구분	지급비율(연간,%)	비고(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매입시
환매수수료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종류 C3 수익증권 : 5

구분	지급비율(연간,%)	비고(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매입시
환매수수료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Cw : Wrap

구분	지급비율(연간,%)	비고(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매입시
환매수수료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종류 e 수익증권 :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한자

구분	지급비율(연간,%)	비고(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50%	매입시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시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자산운용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15%		매 3개월 후급 및 투자신탁의 일부 또는 전부 해지시
판매회사보수	종류 A	순자산총액의 0.60%	
	종류 A2	없음	
	종류 B	없음	
	종류 C	순자산총액의 1.40%	
	종류 C2 <장기주택미련>	순자산총액의 1.00%	
	종류 C3	순자산총액의 0.20%	
	종류 Cw	없음	
	종류 e	순자산총액의 0.14%	
수탁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05%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0.005%		
기타비용 ¹⁾	종류 A	순자산총액의 0.013%	사유 발생시
	종류 A2	순자산총액의 0.002%	
	종류 B	순자산총액의 0.002%	
	종류 C	순자산총액의 0.001%	
	종류 C2 <장기주택미련>	순자산총액의 0.001%	
	종류 C3	순자산총액의 0.001%	
	종류 Cw	순자산총액의 0.001%	
종류 e	순자산총액의 0.001%		
총 보수·비용 비율	종류 A	순자산총액의 0.773%	-
	종류 A2	순자산총액의 0.162%	
	종류 B	순자산총액의 0.162%	
	종류 C	순자산총액의 1.561%	
	종류 C2 <장기주택미련>	순자산총액의 1.161%	
	종류 C3	순자산총액의 0.361%	
	종류 Cw	순자산총액의 0.161%	
종류 e	순자산총액의 0.301%		

주1)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정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2006.3.14~2007.3.13)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 ①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 ②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 ③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④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⑤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⑥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⑦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⑧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⑨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다음 비용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비용을 말합니다.

①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 비용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사>(단위: 만원)

구분	선취 수수료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10	8	25	43	99
종류 A2	0.3	2	5	9	21
종류 B	0.3	2	5	9	21
종류 C	-	16	50	88	201
종류 C2 <장기주택 마련>	-	16	52	91	206
종류 C3	-	4	12	20	47
종류 Gw	-	2	5	9	21
종류 e	5	3	10	17	29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 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1)

(2)

가
< (2008 4) >

	14.0%	14.0%	-
	1.4%	-	-
	15.4%	14.0%	

(3) Class C2 < >

87

81

	0%	가 가	가 가
	0%	가 가	가 가

	0%	가 가	가 가
, 가			7
			가 . , 저축

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 (1) 80 5
1. .
 - 2.
 - 3.
 4. 3 .
 5. , 가 가 ,

<7 (2008 4)>

	14.0%	가 가	가 가
	1.4%	가 가	가 가
	15.4%	가 가	가 가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오후3시 이전에**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2) **오후3시 경과 후에**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단,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구분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오후3시 이전에 납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오후3시 경과 후에 납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 합니다.**

2.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한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환매 방법>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오후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2) 오후3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구분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오후3시 이전에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오후3시 경과 후에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 합니다.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의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5시 [오후3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17시[오후5시]이전까지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환매수수료>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다음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 종류 A 수익증권 : 환매수수료 없음
- 종류 A2 수익증권 :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종류 B 수익증권 :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종류 C 수익증권 :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종류 C2 <장기주택마련> 수익증권 :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종류 C2 수익증권 :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종류 Cw 수익증권 :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종류 e 수익증권 : 환매수수료 없음

	C2 <	>	2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3	_____	
_____ 가 가 _____			

3. 이익 등의 분배

가	C2 <	>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가 ' 2 . ' ' . .
' 3. ' . .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벤치마크인 대표주가지수 수익률을 추적하면서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합니다.

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펀드에 편입되는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는 대표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식들로써 대표주가지수를 구성하는 비중과 유사하게 구성되며 추적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운용됩니다.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내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주식들의 배당 수익
- 2)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 대표주가지수선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률이 낮은 것을 매수하고 수익률이 높은 것을 매도하였다가 향후 수익률의 차이가 줄어들거나 역전이 되는 경우 청산하는 차익거래
- 3) 보유 주식 대치를 통한 대치수수료
- 4) 보유 주식의 매수청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

※추적오차(Tracking Error) 관리 방안

투자 자산 중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는 당시의 인덱스 복제 시스템에 의하여 구성되어 지고, 구성된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는 사전에 정해진 운용프로세스상 제약 조건에 따라 정기 리밸런싱(월별) 및 상시 리밸런싱을 통해 벤치마크 수익률 대비 0.50% 이상의 추적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단, 인덱스 구성 종목의 변경 또는 구성종목의 비율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운용프로세스상 제약 조건은 시장 상황에 따라 월별로 변경 가능 합니다.

※ 용어설명

- 1) **추적오차(Tracking Error)** : [인덱스복제포트폴리오 수익률 - 대표주가지수 수익률]의 절대값
- 2) **상장지수펀드(ETF)** : 대표주가지수와 같은 수익률을 내도록 설계된 펀드로서 거래소시장에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음
- 3) **차익거래** : 동일한 상품에 대해 두 시장에서 서로 가격이 다른 경우 가격이 저렴한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입하고 가격이 비싼 시장에서는 그 상품을 매도해 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2.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 위험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주식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 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계의 변경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100%이하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발행 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②	채권	40%이하	2 1 1 4 , (가 A-
③	어음	40%이하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증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④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⑤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⑥	수익증권등	5%이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30%이하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
⑦	투자증권의대여	투자증권총액의 50%이하	

⑧	주식및채권관련장 내과생상품	위험평가액이 10%초 과, 위탁증거금 합계액이 15%이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 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O금리선물, 통인 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⑨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이하	
⑩	투자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할 수 있음.	
<p>※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함.</p> <p>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⑤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p>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 관계인(법 시행 령 제77조 적용)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 습니다. 다만, 다음 ①~③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①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인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 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②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법 제2조제7호의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어음 에 한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 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 서 및 어음,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 다) 또는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 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 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 및 상장지수간접투 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③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합니다.	
파생상품 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행위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주식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등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나, 부도 등의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II. 자산의 평가

1. 자산평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분	내용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일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간접투자증권은 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거래증권사 및 선물중개사에 대한 평가 및 선정은 분기 단위로 하며, 분야별로 구분하여 평가·선정>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거래	<p>1)일반주식매매 -거래증권사 :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리서치/프리젠테이션능력, 정보제공/영업능력, 매매업무수행능력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p> <p>2)Cyber 주식매매 -거래증권사 : Cyber 주식매매를 시행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위탁수수료, 매매업무 수행 능력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트레이더</p> <p>3)일반채권 매매 -중개기관으로서의 안정성, 거래 효율성, 정보제공능력, 업무의 편의성 등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CD, CP의 주요 중개기관인 조흥, 외환, 우리, 산업, 기업은행은 당사 필요에 따라 거래증권사 선정의 예외로 인정하여 거래사에 포함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트레이더, 신용분석가</p> <p>4)신규 발행 채권 인수 -국고채를 제외한 신규발행물 인수시에는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 대상으로 선정된 증권사 이외의 증권사와 거래 가능</p> <p>5)외화표시채권 매매 -외화표시채권은 매매와 중개기관의 특성상 거래시 운용본부장의 개별 승인을 득하여 거래 가능</p>

장내파생상품 거래	<p>1)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p> <p>-거래증권사 : 주가지수관련 파생상품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정보/영업능력, 위탁수수료, 매매업무수행능력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p> <p>-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p> <p>2)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p> <p>-선물중개사 : 중개기관으로서의 안정성, 거래 효율성, 정보제공능력, 업무의 편의성 등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부여하여 평가</p> <p>-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p>
-----------	----------------------------------------------------------------------------------------------------------------------------------------------------------------------------------------------------------------------------------------------------------------------------------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 사항

<수익증권 매입시
기준가격 등>

- (1)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판매회사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2) (1)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오후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이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기준가격을 1,000원으로 합니다.

구분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오후3시 이전에 납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오후3시 경과 후에 납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5시 [오후3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3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17시[오후5시]이전까지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2. 환매관련 유의 사항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기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자산운용 회사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익증권 환매시
기준가격 등>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 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오후3시 이전에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오후3시 경과 후에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5시 [오후3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3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17시[오후5시]이전까지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 23 , 25 27

<수익증권의 환매 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 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 연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의 사유
 -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 투자증권등 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1) 또는 (2)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위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2)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재개시 환매금의 지급방법
- (3)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금의 지급방법

환매연기사유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합니다.

- (1)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수익증권의 부분 환매>

- (1)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약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2) (1)의 규정에 따라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3) 자산운용회사는 (2)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4) 자산운용회사는 (3)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 (5)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수탁회사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분배관련 유의 사항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상환금등의 지급>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약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 자산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에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명칭	교보투자신탁운용(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 빌딩 12층
연혁	1988. 7. 7 교보투자지문(주) 설립 (교보생명 전액 출자) 1988. 8. 1 투자지문업 등록 (재무부 등록번호 제23호) 1996. 7. 29 투신 운용업 본인가 취득 1996. 7. 30 교보투자신탁운용(주) 출범 1999. 1. 14 투신수탁고 10조달성 2005. 9. 1 김석규 대표이사 취임

2. 주요업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무 및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업무위탁> (1)간접투자재산의 평가업무

자산운용회사는 법시행령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제3자를 통하여 영위할 수 있습니다.

(2)기타 업무의 위탁

가

164

3

3. 최근 2사업연도의

요약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항목	대차대조표		항목	손익계산서	
	' 07.3.31	' 06.3.31		' 07.3.31	' 06.3.31
유동자산	51,075	46,189	영업수익	13,203	12,739
고정자산	4,164	6,280	영업비용	9,524	9,843
자산총계	55,239	52,469	영업이익	3,679	2,896
유동부채	2,049	1,385	영업외수익	3,212	69
고정부채	149	721	영업외비용	-	296
부채총계	2,199	2,107	경상이익	6,891	2,669
자본금	30,000	30,000	특별이익	-	-
이익잉여금	23,040	18,992	특별손실	-	-

자본조정금	-	1,370	세전순이익	6,891	2,669
자본총계	53,040	50,362	당기순이익	4,948	2,041

4. 운용자산 규모

2008 4 7

(:)

				MMF			
	3,156	11,934	4,447	3,922	20,954	13	44,426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971		17	14,595	-	9
	1974				-	8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인텍스운용팀이 담당하며,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사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판매회사의 영업점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
	1가 1	www.kyobo.co.kr
1588 - 1001	26-4	www.iprovest.com
	23-2	www.goodi.com
02)3772-1000	246-1	www.kyongnambank.co.kr
1588-8585	34-8	www.daishin.co.kr
02)769-2000	34-3	www.bestez.com
1588-3322	27-3	www.daetoo.com
02)3771-7114	36-5	www.winnet.co.kr
02)369-3000	2가 185	www.myasset.com
02)3770-2000	736-1	www.leadingkorea.com
02)2009-7000	34-10	www.imeritz.com

	02)785-6611	
	02)3774-1700	45-1 www.miraeasset.com
	02)368-9200	34-2 www.bookook.co.kr
	02)3779-3000	3가222 www.bridgefn.com
	02)772-1004	1가25-5 www.bngsec.com
	02)787-4000	16-3 www.kdb.co.kr
	1588-3114	2가 www.samsunglife.com
	02)2020-8000	2가6 www.samsungfn.com
	1588-6300	23-9 www.seoulstock.co.kr
	02)2004-9000	34-8 www.shinyoung.com
	1599-8000	2가120 www.shinhan.com
IB	02)3787-2114	25-2 www.hmcib.co.kr
	02)2008-5000	1가203 www.wooribank.com
	02)768-7000	23-4 www.wooriwm.com
	02)3770-0100	23-7 www.yhs.co.kr
	1566-2566	2가50 www.kiupbank.co.kr
	02)3787-5000	23-7 www.kiwoom.com
	02)3770-7114	838 www.prucyber.com
	02)2002-1111	1가101-1 www.hanabank.co.kr
IB	02)3771-3000	23-3 www.clickhana.co.kr
	02)3276-5000	27-1 www.hantutams.com
	02)3777-8000	23-2 www.hannuri.co.kr
	02)771-7711	1가84 www.kfbc.co.kr
	02)3770-5000	34-11 www.hygood.co.kr
	02)3772-7000	23-5 www.koreastock.co.kr
		34-4 www.youfirst.co.kr

	02)768-0114	
CJ	1 02)318-9111	www.cjcyber.com
KGI	44-5 02)3770-9000	www.kgieworld.co.kr
NH	891 02)2004-4114	www.sejongiz.com
SK	23-10 02)3773-8245	www.priden.com
	28-2 KT 8 1588-2428	www.etrade.co.kr

2. 주요업무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수익증권 환매업무
수익증권 교부업무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각종 장부·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의무 및 책임>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시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판매행위준칙등>

①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이하 이 조에서 "판매행위준칙"이라함)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2.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3.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②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

는 아니됩니다.

⑤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⑥자산운용협회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Ⅲ.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02)2002-1111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hanabank.co.kr

2.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지의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의무 및 책임>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Ⅳ.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에이브레인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02)2014-20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abrain.co.kr

2. 주요 업무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3. 의무 및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 투자회사의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
- 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무

V.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채권평가회사의 개요

		211	
가	9 02)399-3350		: 2000.5.29 : 2000.7.1
KIS 가	2 02)3215-1420	35-6	: 2000.6.20 : 2000.7.1
가	6 02)398-3900	15	: 2000.6.16 : 2000.7.1

2. 주요 업무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간접투자자구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합니다.

제4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의결사항>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신탁보수 또는 수수료 인상, 수탁회사 변경, 신탁기간 변경 등 신탁약관 변경에 관한 사항
- (2) 수익증권 환매의 연기에 관한 사항
- (3)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 (4)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사항

<의결권> 의결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의결권은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 (2) 수익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의결방법> 수익자총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안을 결의하게 됩니다.

- (1)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2)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익자는 자산운용사가 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하여 교부한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도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소집 주체 및 통지>

- (1)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되며,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2)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일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잔여재산분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등” 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수탁회사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yoboitn.co.kr) 자산운용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정기공시 사항 및 보고서는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감사보고서>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대차대조표
- (2) 순익계산서
- (3) 기준가격계산서
-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2. 수사공시

<약관의 변경> (1)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수탁회사와 신

탁계약을 체결한 후 자산운용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표준신탁 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후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지체없이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의 의결(아래①~⑥에 해당하는 사항)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증권예탁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수탁회사의 변경

③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⑤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⑥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2.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이상 공고

(3)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4) 수익자가 (2)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기간(이하 "이의신청기간"이라 한다) 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신탁약관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의결권행사>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2)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수시공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www.kyobotm.co.kr)·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5)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 (7)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 (8)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기타 장부·서류>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 명칭 : 교보파워인텍스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판 매 일 : _____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